

감독(監督) : 공익(公益)과 창의(創意)



글 김상순
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

누군가의 위임을 받아서 그를 위하여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경우, 맡은 일이 위임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변호사 윤리장전 제1조 제2항). 변호사 윤리 장전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윤리 이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윤리,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에 대한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위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직업윤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변호사에게는 수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의뢰인의 사익(私益) 및 법률전문직으로서 추구해야 할 공익(公益) 등 공통의 이익(공익, 公益)의 양면을 잘 조화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 또는 일 전체를 지휘함’이라 감독(監督)의 뜻을 적고 있다. 또 한편 직업(職業)으로서의 감독은 ‘영화나 연극, 운동 경기 따위에서 일 전체를 지휘하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일 전체를 지휘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다. 법률가에게 있어서 전체를 파악하여 조감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서로 다른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소재로 이야기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남녀 간의 결합을 다루는 로맨스를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로맨스 영화 중에서 제목부터가 사랑의 양면을 잘 보여

주는 영화를 겨울 호의 첫 영화로 골라 보았다. 냉정과 열정 사이. 나카에 이사무 감독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는 에쿠니 가오리와 쓰지 히토나리의 소설이 원작이다. 작가들은 주인공인 아오이(진헤림 분) 및 아가타 준세이(다케노우치 유타카 분)의 각 시점에서 소설을 썼고, 레드와 블루로 묶여 출간되었다. 영화에서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를 시간 배경으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공간배경으로,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른 성별, 상반된 습성, 대조적 시각. 이 영화는 많은 연인의 희로애락을 잘 섞어두었다. 원작 소설만큼이나 영화도 히트하였고, 영화에 등장한 음악은 여러 CF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

인이라면 조금의 세월이 흐른 후 언젠가 특정 장소 어디선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객체나 사물에 불과하였던 성당 구조물이 영화의 주요한 인자(因子)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을 잘 느끼게 해 준다. 파리의 에펠 탑일 수도,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일 수도, 비엔나의 원부른 궁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 이후론, 두오모 성당이 아니면 어색해진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여러 영화 중 굳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선택한 이유는 사건을 대하는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서 ‘냉정’과 ‘열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고 의뢰인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 하지만, 아울러 냉철함과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둘은 별개의 특성을 가지지만 조화되거나 공존되어야 한다. 현실과 유리된 법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학설과 판례는 동시대에 함께 존재하며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한다. 특히 형사재판은 검사 변호인 판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루어 내는 한 편의 영화이다. 공개 재판주의 원칙하에서는 모든 국민이 그 관객이 된다.

게다가 남자 주인공인 ‘준세이’의 극 중 직업은 고미술품 복원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은 물감



2003년 개봉한 「냉정과 열정 사이」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의 색이 바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손상된다. 그는 훼손된 고(古)미술품을 천재적 기량으로 복원한다. 복원작업은 단순히 색깔을 덧칠하고 덧입히는 것을 넘어서, 복원자가 파악하고 이해한 원작자의 의도가 고스란히 재해석되어 담기게 된다. 누가 복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진다. 즉, 복원(復原)이란 모방과 창의가 접목되는 일이다.

원전(原典)이 있고 이를 재해석하는 일은 법률가가 가장 익숙한 일이다.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그 의의를 해석하고 적용 집행한다. 해석하는 시대 해석자의 철학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 심지어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분석에서부터 차별점이 시작될 수도 있다. 법률가의 일과 미술품 복원사의 일은 분명 맞닿은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住居)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침입(侵入)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만,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침입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날로그의 오프라인 세상 이외에 디지털의 온라인 세상이 생겼다. 현실의 세계에 더하여 온라인 세계가 추가된 만큼이나 세상은 더 복잡해졌고, 법률문제도 급증해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기존의 규정을 재해석함으로써 규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궁리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침입(侵入)’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 ‘들어온’ 경우도 침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정보통신망에 ‘들어와 있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접근 권한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채 접속해 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지만, ‘침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은유(隱喩)는 법의 세계에서든 원용(援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는 은유(metaphor)와 상징(symbol)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영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정확히는 감독이 만들어낸 은유와 상징을 영상으로 겪기 위하여 우리는 극장에 간다. 만화를 영화화한 이른바 히어로물 중에서 ‘엑스맨’ 시리즈를 한 번 보자. 2014년 봄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영화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가 상영되었다. 1990년의 과거와 2001년의 현재를 넘나들었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2023년의 현재와 1973년의 과거를 오고 가며 스토리가 진행된다.

이 영화에서의 엑스맨은 초능력을 가진 뮤턴트(Mutant, 돌연변이)다. 폭풍우를 부르고, 얼음을

다루고, 눈에서 레이저를 뿜어댄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부러워했을 법한 상상 아닌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내가 자력(磁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이러한 초능력이자 등장하는 스토리는 처음에 볼 때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등 특수효과에 감탄하며 멍하니 스트레스 해소용도 감상해도 좋다. 두 번 볼 기회가 생긴다면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재밌다.

영화 밖 세상에서 사람은 저마다 가진 장점이 있다. 누군가는 신뢰감 있는 외모를, 누군가는 불같은 열정을, 누군가는 차가운 지성을, 누군가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그리고 누군가는 설득력 있는 표현력을. 이러한 장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상징화하고 은유해보면, 영화 엑스맨 시리즈에서의 초능력과 돌연변이에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외모 변환 능력, 불과 번개를 뿜는 초능력, 열음을 다루는 능력, 하늘을 나는 초능력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나는 어떤 초능력자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진 장점이나 능력을 극대화한다면, 어떤 종류에 초능력에 대응될까. 나는 누구일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이 귀하게 뭘 잘 한다고들 하던가요. 엉뚱하게도 엑스맨 시리즈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

차이점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우리는 이를 돌연변이(뮤턴트, mutant)라 부른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부분에서는 평균치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평균치에 미달하는 능력을 가진 경우는 어떨까. 평균치에 모자라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까지 돕고 보살펴야 할 것인가,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하는 명제는 종래 차별금지(差別禁止)나 후견(後見)의 문제로 다루어 왔다. 법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해당되고 관심권 밖이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개봉한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포스터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그런데 최근 지나치게 법이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카테고리도 있다. ‘게임’ 카테고리에서의 ‘셧다운(shut-down) 제도’다. 지금은 논란의 열기가 조금 가시긴 했지만 생각해볼 많은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인 의무부과가 특징이다.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되므로 아케이드 게임 또는 모바일 게임과 차별적 취급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 좀 더 경청해보아야 할 흥미로운 논거는 게임시간 조절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통제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이 개인의 생활 중 얼마나 깊숙한 부분까지 개입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법의 가부장적 지위(家父長, paternalism)에 대한 논의도 그 연장 선상의 한 줄기에 해당한다. 1인 1 스마트기기 시대가 되면서 가족끼리의 외식 테이블에서도 각자의 모바일 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 고개 숙인 가족을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게임이 해악을 끼친다면, 게임을 부모와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언가의 지위를 ‘코스프레’하고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롤플레이팅 게임(RPG, Role Playing Game) 장르 말이다.

마지막 영화는 연말연시답게 가족 영화를 골랐다. 아빠가 알려주는 역할 놀이도 등장한다. 많은 영화팬이 최고의 영화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20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였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 및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성인이 된 아들이 과거의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주인공 ‘귀도 오라피체’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어린 아들 ‘조슈아’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가상의 게임(game) 상황을 만들어 설명한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의 시간들의 연속인 수용소 생활이지만, 아버지로서의 ‘귀도’와 남편으로서의 ‘귀도’는 여전히 미소 띤 여유로운 얼굴로 최선을 다한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진행되는 영화 후반부는 모든 자식 가진 아버지들에게, 어여쁜 아내를 둔 남편들에게 숙제를 준다. 허, 참. 쉽지 않은 숙제다. 미혼이던 시절, 이 영화를 보고서 ‘아, 나는 과연 저런 가장(家長)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한 탈출계획을 세우는 적극적 아빠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 사고로 이겨내는 소극적 아빠라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초능력을 가진 ‘엑스맨’이 아닌 한, 평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지고, 아들은 무사히 살아남



1997년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았다. 성년이 된 아들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유쾌함으로 아들과의 역할놀이에 충실했던 부정(父情)을 기억하고 또 기리고 있다. 어떤 순간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채 미소를 잃지 않는 고수(高手)는 빛난다.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즉흥적으로 게임을 만들어내는 극 중 주인공의 크리에이티브(creative)는 놀랍다. 곧 끌려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향한 미소와 윙크를 잃지 않는 ‘귀도’의 부성애는 숭고하고 존경스럽다.

법률가는 소송, 자문 등의 종합예술로서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감독(監督)’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영화감독, 연극감독 등에게 더 많은 전문지식과 소양이 요구되듯, 전자소송 시대에서 법률가에게도 새로운 많은 디지털 스킬이 필요하게 되었다. 감독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자 이에 적응하

기 위한 법률가의 가장 큰 덕목은 ‘크리에이티브’가 되었다. 원전(原典)이 있고 이를 재해석하는 일은 법률가가 가장 익숙한 일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해 내는 일도 법률가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언제 올지 기약은 없다. 하지만 꾸준히 수련하다 보면, 창의(創意)는 곁에 문득 다가와 있을 거다. 얼른 오렴.

어느 직업이든 여러 양상을 가지게 마련이어서, 법을 다루는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역할이나 지위가 교차하고 공통(共通)된다. 한정된 지면 속에서 영화라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였지만, 위엄(威嚴)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라는 직업을 재해석해보자는 창의(創意)적 과제를 스스로 부여해두고, 지난 1년간 계절마다 이를 추구하여 영화 칼럼 원고를 송부하면서 즐거웠다. 누군가의 인생을 숙련(熟練)된 절차로 다루어, 조사(照査)하고 결합(結合)하고 판단(判斷)하고 결정(決定)하게 되는 변호사의 속성상, 나는 사건마다 탐정(探偵)이고 심판(審判)이며 고문(顧問)이자 감독(監督)이 된다.